

함께 한 40년, 앞으로 행복하게 40년!



육군사관학교 39기 한백동기회

3 6 대 한 백 동 기 회 활 동 모 토

"추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쌓아가는 한백동기회"

- ① 한백 동기의 우정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활동 증대
- ② 모임과 친목활동 강화
 - SNS를 통한 소식전파, 소통활성화
 - 중대(졸업, 기훈)모임, 지역 및 동호회 등 접촉면 확대
 - 연락없는 동기생, 유가족의 동참 적극 유도



36대 동기회장 이석봉

③ 대내·외 교류활동 확대

- 해·공군 동기생, 4군자회(3사.학군.학사) 등과의 친교활동 유지
- 동기생들의 능력, 대외홍보 및 활동영역 발굴활동 강화
- 육사 총동창회 등 유관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2019년 월별 사업계획									
월	내용	월	내용							
1월	 신년 현충원 참배(1.2) 총동창회 임원회의 참석(1.10) 총동창회대의원 총회 참석(1.24) 테니스 동호회(1.26) 	7월	 총동창회 임시대의원회의 참석(7.11) 졸업중대별 수영대회(7.26) 테니스 동호회(7.27) 							
2월	임원진 임시회의(2.14)졸업생도 75기 격려(2.21)테니스 동호회(2.23)	8월	동호회 활동 전반기 성과분석(8.9)골프 동호회(8.23,선봉대)테니스 동호회(8.31)							
3월	라이딩 동호회(3.9~10, 홍천)골프 동호회(3.14,태릉)테니스 동호회(3.30)	9월	 총동창회 테니스 한마당 참석(9.21) 골프 동호회(9.19,선봉대) 테니스 동호회(9.28) 							
4월	골프 동호회(4.4, 남수원)테니스 동호회(4.27)	10월	육사인 한마음 등반대회참석(10.19)골프 동호회(10.17,선봉대)테니스 동호회(10.26)							
5월	 육사 개교기념일 행사 참석(5.1) 골프 동호회(5.9,동여주) 라이딩 동호회(5.22~25,일본) 테니스 동호회(5.25) 	11월	임원진 임시회의(11.8)골프 동호회(11.14,선봉대)테니스 동호회(11.30)							
6월	 현충원 참배 및 유가족동기회(6.6) ·6,25참전비 참배행사 참석(6.25) ·골프 동호회(6.27) ·테니스 동호회(6.29) 	12월	골프 동호회(12.5,태릉)동기회 총회(12.6)테니스 동호회(12.28)							

36대 한백동기회 임원(2019.1월)

구분		성명	연락처(휴대폰)	근무지	졸업중대대표			
동기회장		이석봉	010-2087-7808	미래빌더	1	1 이석봉 010-208		
71.1	1	서태진	010-3171-6439	한국안보협업연구소	2	김종익	010-5286-4456	
감사	2	고 석	010-8969-2070	법무법인 세종	3	이정원	010-3988-2147	
7.0	1	김용우	010-5075-1634	육군본부	4	전덕식	010-9903-3942	
고문	2	변재선	010-9477-7803	대한토지신탁	5	황해상	010-2799-2919	
	1	최돈철	010-5085-8276	(육군본부)	6	김용규	010-4001-3571	
	2	박경양	010-5202-1399	(주)하렉스인포텍	7	곽일정	010-5072-1110	
	3	전덕식	010-9903-3942	브로냐페인트	8	전호진	010-4087-6439	
	4	송태식	010-5090-1330	법무법인 세종	9	정호수	010-2020-0682	
ㅂ칭자	5	이연택	010-5367-8679	이오시스템	10	김연준	010-8707-8030	
부회장 	6	문양호	010-4073-6439	건양대	11	김태식	010-8572-8246	
	7	이정원	010-3988-2147	사이버텍	12	조규덕	010-5077-8259	
	8	이기덕	010-5084-3179	합참	13	박종관	010-5371-7811	
	9	김규하	010-5852-3086	서경대학교	14	유정훈	010-2905-2805	
	10	장중호	010-8009-3760	원일식품	15	윤문섭	010-7160-8100	
사무총장	사무 총 장		010-3338-6439	심넷	16	임예서	010-5607-5662	
11077	1	윤상균	010-5078-2364	(주)대림	지회장		지회장	
사무국장	2	강종화	010-5075-6430	용인송담대학교	서울	이기덕	010-5084-3179	
7117J 77 7L	1	정수한	010-3066-6439	울산대학교	강원	이영노	010-3771-3052	
재정국장	2	이동재	010-5071-3901	(보훈처)	부산	김성우	010-4902-3541	
퍼크! 그구L	1	이광석	010-8959-8147	한국에너지공단	대전	이득운	010-5079-0241	
변집국장 -	2	황해상	010-2799-2919	월드투게더	호남	-		
	1	정종식	010-7266-8247	한림대학교	동호회		동호회	
연락국장	2	이정훈	010-5072-0412	사이버대학교	한골모 정양선 010-507		010-5072-4566	
	3	김윤배	010-2338-5063	썬리치국제 특 허	한테모	김용규	010-4001-3571	
	1	최병욱	010-5072-9580	고려대학교	한라모	배성기	010-5664-7442	
대외협력국장	2	장 혁	010-2760-9312	국방대학원				
	3	안재국	010-4559-1870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역분회			
	4	신창우	010-4387-4190	포스코	용수성 이순동 010-5		010-5108-6270	
	5	김용규	010-4001-3571	코스콤	글로벌 엄경수 +1-347-		+1-347-721-1106	
	6	문창희	010-8565-1916	KIST	북한산 황해상 010-2		010-2799-2919	
	7	이상범	010-6886-8164	서울우유협동조합				

역 대 한 백 동 기 회 임 원 (1/2)

시기 (종료)	구분	회장	부회장	총무	친목	섭외	연락	편집	재정	감사	고문 (간사)
1983.7	1대	서진욱		이영우	정호수	김명중					권오한
1984.10	2대	김영덕		이진	정호수	김명중					김경환
1985.10	3대	지홍기		박상철	김기환	김영승					
1986.10	4대	김재홍		강창구	김찬섭	김창호	김영승	김기철			방성환
1987.10	5대	장윤영		김명규	장재영	황창석	장진수	김준			용원순
1988.10	6대	정수한		박진수	정한기	이기영 전춘택	정창모	이광석			김지수
1989.7	7대	이필건		채재철	박진수	신출균	정창모	이영노			김지수
1990.7	8대	권광택		김영섭	김기춘	박종석	유정훈	성상모			김길수
1991.4	9대	원세헌		박경양	조원철	이영우	이득운	이진원			최달수
1992.4	10대	배성기		박경양	이정훈	김종찬	오효석				이문환
1993.4	11대	서태진	이기섭 <u>손</u> 석현	이형국	장광현 최달수	이춘권	윤문섭	신창우 정양선			이필건 이성태
1994.3	12대	구영수	이영노	윤보원	정한기 이일구	김용현	윤문섭	배병국 현성룡	김영섭		이성태 이종구
1995.3	13대	박문상	이인희 이동재	유성식	정양선	김용현 건 춘 택	이춘권 박종완	이영옥 정찬희	정한기	이성태 이수교	이성태 이종구
1996.10	14대	전호진	정 종 식 정창모	이장흠	방성환	이석봉 허상녕	윤문섭	장진수 이영옥	홍두표	이성태	
1997.10	15대	이종원		정창모							
1998.11	16대	구영수		정창모							
1900.4	17대	문양호		이성태							
2001.5	18대	김두수		강창구				김광섭			
2002.5	19대	홍두표		전덕식							
2003	20대	장중호		김남규							
2004	21대	김남규		정한기							
2005	22대	?		?							

역대 한백동기회 임원(2/2)

시기 (종료)	구분	회장	부회장	총무	친목	섭외	연락	편집	재정	감사	고문 (간사)
2006	23대	김규하		이기섭							
2007	24대	?		정창모							
2008	25대	채재철		김지수							
2009	26대	고석		정한기							
2010	27대	김완태		공회식							
2011	28대	서태진		길승종 문창희							
2012	29대	이문환		문창희							
2013	30대	이문환	홍두표 유순환 이연택	문창희 문양호	김경환 황해상 이일구	박상철 전덕식 황일성	이인희 임예서 이종명	신언석 류창하 이정훈	정창모 채재철	한용섭 정정묵	서태진
2014	31대	조국제	황일성 서태진 이만섭	이정훈 정공면	박경선 김경환 이일구	문창희 전덕식 박 종 관 문양호	이인희 유정훈	정창모	채재철	강중호	이문환 이연택
2015	32대	최돈철	전덕식 변재선 송태식 이연택	정양선 이일구	이기덕 금동학 이만섭	문창희 문양호 김남규	이정훈 김두수	정창모	채재철	서태진 고석	조국제 이문환
2016	33대	변재선	박경양 송태식 문양호 이연택 전덕식	이광석 김두수	이기덕 금동학 이만섭	문창희 윤상균	정양선 이일구	정창모	채재철	서태진 고석	최돈철 장재환
시기 (종 료	구분	회장	부회장	사무 총장	사무	친목	연락	편집	재정	감사	고문
2017	34대	김용우	장광현 문양호 이정원 송태식 전덕식 이연택 박경양	이상범	정양선 김두수	정수한 이석봉	정창모 이정훈	이광석 황해상	채재철 강중호	서태진 고석	최돈철 변재선

한 백 동 기 회 회 칙

['83.3.28 제정, '17.12.21 14차 부분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육군사관학교 제39기 동기회'라 칭하고, '한백동기회'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절차탁마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본 회는 본부를 수도권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1979년도 육군사관학교에 가입교한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로 한다.
- 제5조(권리·의무) 본 회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와 총회 의결사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자격상실·회복)

- 1. 본 회의 정회원이 대내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 의결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2. 본 회 의결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사실 경중을 고려하여 2년 이상 경과 후에 본인이 가입서약서와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총회 개회 이전에 임원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부재자 투표 포함) 찬성 의결시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동기회 활동 모토

35대 동기회 임원

제 3 장 임원

제7조(임원)

- 1. 본 회 임원은 아래와 같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시는 유임할 수 있다.
 - 회장: 1인

- 고문: 2인
- 부회장 2~5인

- 사무총장 1인
- 사무국장 1~3인
- 재정국장 1~2인
- 편집국장 1~2인
- 친목국장 2인

- 연락국장 2인
- 감사 2인
- 2. 회장은 다수의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필요시 회장의 재량으로 임원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임원 선출 및 임명)

- 1. 회장: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위 해당자가 없을 시 1차 투표 결과 다득표자 2인을 지정하여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 2. 임원: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단, 감사 2명은 총회에서 동기회장 선출 시에 같이 선임하며, 감사 1명은 바로 이전 동기회 임원에서 선임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 1.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여 계획·집행·감독한다. 회장은 회원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임원회의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연간 운영계획과 예산안을 공지해야 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임원들의 상호 연락유지 및 유대관계 조성, 지회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이 지정한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록을 기록유지하며 할당되는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분기 1회 자금현황을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일부 임무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5. 재정국장: 본 회 재원관리 및 증식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재원관리계획을 임원회의에 상정하고, 분기단위 재원현황을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 6. 편집국장: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월별(또는 분기별) 동기회보 편집, 주소록 등 발간업무와 동기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관하다.
- 7. 친목국장: 본 회 회원 상호간 친목활동과 관혼상제에 관한 업무(동기회 조기, 조화, 화환 등)를 관장한다. 친목국장 2인 중 1인은 동기생 정회원간의 친목, 다른 1인은 명예회원 및 고인의 미망인 및 가족과 관련한 친목을 증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8. 연락국장: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해당지역 지회장들 및 중대대표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동기 연락처를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 9. 감사: 동기회비의 지출·적립·투자내용 등을 반기1회 이상 확인·감사하고 차기 동기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 10. 고문: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고문은 전임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 11. 모든 임원은 본 회 정회원이 참여하는 SNS 활동에서도 위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은 사무총장과 편집국장을 SNS 활동을 주관하는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종류) 본 회는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동기회 활동 모토

35대 동기회 임원

제11조(회의 소집)

- 1. 정기총회: 연 2회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임시총회: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원회의를 통해 개최할 수 있다.
- 3. 임원회의: 동기회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시 회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제12조(지회, 중대모임 및 동호회 운영)

- 1. 기훈중대, 졸업중대 등 중대모임과 지역별 소모임을 활성화 하며, 가용 여건 내에서 지회모임을 적극 권장한다.
- 2. 동호회 활동은 가용한 한 다양한 종목별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동기회에서 적극 지원한다.
- 3. 회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지회 편성을 조정하고 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성립 및 의사 결정) 총회는 50인 이상의 정회원 출석(지회원의 의결권을 위임 받아 지회대표자가 참석한 경우 지회원 모두가 참석한 것으로 한다.)으로 개최되며, 총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정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회칙 수정 및 개정
- 2. 회장 선출
- 3. 예산 사용 승인 및 결산
- 4. 임원회의 및 지회의 제출안건 의결
- 5. 기타 임원회의에서 제출한 안건

제15조(임시총회 의결사항) 소집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16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및 그 임원으로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동기회 활동 모토

35대 동기회 임원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 3. 회비결정 및 예산편성(안)
- 4. 회칙 수정안 및 시행 세칙(안)
- 5. 본 회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 6. 총동창회 활동 등 각종 행사 참여계획 및 동기회비 지원 여부
- 7. 회칙에서 정한 범위 외의 경조사 지원 여부
- 8. 기타 회장 또는 임원이 제기한 안건

제17조(임원회의 성립 및 의사 결정)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설문조사에 의한 의견 수집시 의결 정족수) 동기회 운용을 위해 사안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설문에 의한 의견수렴(SNS 또는 각 지회별 지회장에 의한 지회원 의견수렴 등) 및 사안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의 1/3이상 제출, 제출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예산 추가거출 또는 집행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 제출, 제출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19조(재원)

- 1. 본 회의 재원은 이미 확보된 기금, 회원의 동기회비, 특별 동기회비, 찬조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고, 필요시 추가 동기회비 거출 여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2. 현역 장성급 장교의 진급, 정부부서의 국장급 이상, 국영 또는 민간기업체 임원급 이상, 국회의원, 시·도/시·군·구 지자체장 등 군과 사회적으로 일정 직위 이상으로 진출한 회원은 해당 직위에 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정의 특별 동기회비를 본 회에 납부한다.
- 3. 모든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동기회 찬조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경조사, 개업, 재취업, 특진, 영전 등) 발생시 본인의 희망액을 찬조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 4. 특별 동기회비 및 찬조기부금은 동기회 재원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납부 내용은 공지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는 동기회에서 납부한 금액의 10% 범위에서 축하(답례) 선물을 전달할수 있다.

제20조(사용) 동기회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 총회 및 임원회에서 의결된 행사의 비용
- 2. 총 동창회 보조비
- 3. 경 · 조사비
- 4. 동기임원 활동비 및 임원회의 운용비
- 5.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본 회와 관련된 기타 사항
- 6. 기타: 각 지회 · 중대모임 및 회원간의 뜻 있는 행사에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별, 사안별로 균형있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관리) 본 회의 재정은 재정국장이 총괄 관리하고 연간 운영비를 할당하며, 은행 예치 외에 별도로 투자할 경우에는 감사가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재정위원 입회하에 임원회의를 거쳐 집행하고, 30일이내에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단, 감사가 추천하는 재정위원은 재정병과 동기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동안 임원의 자격을 갖는다.
-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회장 선출 후 동기회 인수인계일로부터 익년 회장 선출후 동기회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
- 23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해 정기 총회시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 제24조(경조사 지원 사항) 동기회 재원에서 지원하는 경조사의 범위 및 수준은 다음과 같다.
 - 1. 피 지원대상: 정회원
 - 2. 지원 사항
 - 가. 자녀결혼: 10만원 상응 기념 화환
 - 나. 정회원 본인, 배우자, 자녀 사망: 10만원 상응 조화, 조기
 - 다. 부모, 장인 ' 장모 사망: 30만원 조의금, 조기
 - 라. 위 지원사항 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 제25조(회칙개정 제안 공고) 회칙 개정 제안은 회원 20인 이상 발의로 총회에 상정, 총회개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26조(회칙 변경후 효력 발생) 회칙 개정의 의결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위임시) 출석 정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의결된 사항은 회칙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기회 활동 모토

35대 동기회 임원

제7장 회칙 해석 및 적용

제27조(회칙 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본 회칙의 적용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8조(회칙 적용)

- 1. 본 회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단, 2015년 11월 22에 개정된 회칙의 시행 이전 준회원이었던 자에 대한 경조사 재정 지원문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 동기회칙 개정 현황

- 제정: '83. 3. 28. 「육사 39기 동기회 운영내규」
- 1차 부분 개정: '87. 3. 1. (5대 동기회, 제23조)
- 2차 부분 개정: '88. 10. 8. (6대 동기회, 제23조)
- 3차 부분 개정: '90. 7. 15. (9대 동기회, 제23조)
- 4차 부분 개정: '91. 4. 7. (10대 동기회, 제23조)
- 5차 부분 개정: '92. 7. 4. (11대 동기회)
- 6차 부분 개정: '93. 6. 18. (12대 동기회, 제7조, 9조, 21조)
- 7차 부분 개정: '97. 3. 1. (15대 동기회, 제3,4,6,7,9,12,18,24조)
- 8차 부분 개정: '04. 1. 1. (21대 동기회, 제19,20,24조)
- 9차 부분 개정: '11. 3. 16. (28대 동기회, 제7,9,11,12,13,18,19,20,24조)
- 10차 부분 개정: '13. 5. 1 (30대 동기회, 제4,24조)
- 11차 부분 개정: '14. 8. 1 (31대 동기회, 제24조)
- 12차 부분 개정: '15. 11. 21 (32대 동기회, 제4,7,11,12,24,28조)
- 13차 부분 개정: '17. 3. 28 (33대 동기회, 제6,7,9,16,18,19,24조)
- 14차 부분 개정: '17. 12. 21 (34대 동기회, 제24조)